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12.

특 허 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법 제 처 심사 前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유가족 포함)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개정(제187조, 제200조)으로 국제상표 분할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상표법상의 분할출원료를 기준으로 국제상표분할출원에 수수료 산정(안 §11④, §11⑤ 신설)

나.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유가족 포함) 및 지원대상자(유가족 포함)를 추가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공무원 등에 예우 필요(안 [별표 4]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1의 1 및 11의 2 신설)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23.8.1. 수수료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일부 반영되지 못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내용 개정 필요(안 §2①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000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000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4만4천원”을 “5만1천원”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료 : 6만8천원. 다만, 다류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의 지정을 말한다)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3천원으로 한다.

1.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2.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출원료 : 매건 마다 7만3천원

[별표 4]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

면제대상	면제대상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1.~11. (생략)	1.~11. (현행과 같음)
<신 설 >	
<신 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

면제대상	면제대상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1.~11. (생략)	1.~11. (현행과 같음)
11의1. 국가보 훈 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 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 자, 그 유족 또 는 가족	국가 유공자 등과 동 일하게 출원료, 심사청 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권리유형별·절차별 각각 연간 5건)
11의2.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20 11.9.15. 개정 이전 법)에 따라 등록된 지원대 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출원 적용례)
개정안 시행 후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분할출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훈보상대상자의 특허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개정안 시행
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심사청구 및 설정등록을 청구한 건
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 심사청구 후 보정으로 청구항 추가에 관한 적용례) 개정안 시
행 후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u>4만4천원</u> .	9. ----- ----- ----- ----- ----- ----- ----- ----- ----- ----- <u>5만1천원</u> .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료 : 6만8천원. 다만, 다류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u>

<신 설> ④ (생 략)	의 상품의 지정을 말한다) 상표 <u>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 만3천원으로 한다.</u> 1. <u>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없이 상품류 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u> 2. <u>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 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 우</u> ⑤ <u>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출원료 : 매건 마다 7만3천원</u> ⑥ <u>(현행 제4항과 같음)</u>
-----------------------------------	---